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

1. 다면평가위원은 다면평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다면평가위원으로 선발된 경우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공정을 기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다면평가위원은 다면평가 내용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면평가위원은 다면평가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
5. 다면평가 실시부서로부터 전자우편 등으로 제공받은 참고자료는 다면평가 결과를 실시부서로 송부한 이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6. 다면평가위원은 참고자료를 복사하거나 평가에 사용한 서류를 보관 또는 반출할 수 없다.